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논문심사규정

1998년 7월 10일 제정
2006년 4월 7일 개정
2014년 3월 19일 개정
2016년 1월 27일 개정
2017년 1월 13일 개정
2020년 6월 19일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투고 논문의 게재 적정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2.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 (1) 논문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을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에게 할당하며, 편집위원은 관련 전공분야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하여 적합한 논문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한다.
- (2) 논문심사는 논문 1편당 3인의 논문심사위원이 수행한다.
- (3)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하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 또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의 심사는 일반심사와 긴급심사로 구분한다.
- (5) 논문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네 가지로 한다.
- (6) 수정게재의 경우 해당 논문심사위원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7) 수정재심의 경우 원심자는 재심 의뢰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게재가로 처리한다. 수정재심은 2회에 한한다.
- (8)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 (9)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심사위원 위촉기간이 포함된다.

3. 평가

평가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서에 명기된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1)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 ① 연구 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
 - ② 연구 목적의 명확성
 -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④ 연구 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 (2) 논문의 구성과 이독성
 - ① 논문의 구성이 적절한가
 - ② 각주 및 참고문헌의 편집규정 준수여부
 - ③ KICA 논문편집규정의 준수
 - ④ 도표와 그림의 선명성, 편집의 이독성 등
- (3) 영문초록의 질적 수준
 - ① 전반적인 논문내용의 포괄성(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결론 등의 포함 여부)
 - ② 적절한 시제, 표현방법의 사용 여부
- (4) 연구윤리
 - ① 인용문헌의 적합성
 - ② 연구방법상 연구윤리 준수의 수준
 - ③ 타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성과 대비 차별성과 독창성

4. 논문의 수리 및 게재

논문의 종합판정은 별표1의 평가체계에 의하여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네 가지로 하며, 논문의 수리 및 게재는 다음에 준한다.

- (1) 논문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게재 이상의 판정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수정게재 판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논문편집위원회 내규에 의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논문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게재 이상이고, 1인이 수정재심이거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해당 논문심사위원에게 2인의 심사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게재됨을 통보한다.
- (3)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4) 수정게재의 경우 수정게재 판정을 내린 논문심사위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 (5) 수정게재 및 게재가 판정 논문은 초록검수위원회의 영문요약 감수 절차를 거치며, 투고자는 감수 결과 요구되는 수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6) 수정게재 및 게재가 판정 논문은 논문유사도 검증위원회의 표절검증 절차를 거치며, 검증결과 주의를 요할 경우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 (7) 수정재심의 경우 수정재심의 경우 투고자는 판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고 원심자가 재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수정재심 결과가 3회 이상일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8)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9)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따른 사안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5.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논문심사위원

- (1)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가능여부를 학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경우 즉시 예비심사위원으로 교체된다.
- (2) 논문심사를 반려할 경우, 논문심사의 의뢰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반려사유와 함께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긴급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후 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논문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기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예비심사위원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수락 후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에 충분한 심사의견을 기술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재심과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명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7. 수정본 및 답변서 제출

- (1) 수정본은 연구자명을 삭제한 PDF 파일로, 심사답변서는 학회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학회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수정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정본과 심사답변서 미제출 시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취소하거나 이월시킬 수 있다.

[별표 1]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종합판정 평가체계

연번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종합판정결과
0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02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03	게재가	게재가	수정재심	
0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05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06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07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08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09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재심	
10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재심	수정재심	수정재심
12	게재가	수정재심	게재불가	
13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재심	
14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15	수정재심	수정재심	수정재심	
16	수정재심	수정재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